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0

발의연월일: 2024. 7. 5.

발 의 자:김영환・박지원・김남희

강선우・박 정・김한규

전현희 • 박민규 • 최민희

이광희 • 박희승 • 서미화

허 영·박용갑·진성준

송재봉 • 박홍배 • 안태준

박정현 • 김성회 • 김영진

양부남 • 용혜인 • 이언주

이기헌 • 이성윤 • 정일영

이재관 • 한창민 • 박해철

김 유·박지혜·서영교

정성호 · 황명선 의원

(35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이 확정된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기한 없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 집행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 부장관이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변경 및 집행 보류의 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예산 배정에 대한 국회의 감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하도록 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에 예산집행 보류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하여야 한다.
- ⑧ 제6항에 따른 예산 집행 보류 조치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을 기한으로 하여야 한다.
-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예산의 배정) ①	(생	제43조(예산의 배정) ① (현행과
략)		같음)
<u> <신 설></u>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분
		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
		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u>②</u> ~ <u>⑤</u> (생 략)		$\underline{3} \sim \underline{6}$ (현행 제2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u><신 설></u>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계
		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
		된 예산을 모두 배정하여야 한
		<u>다.</u>
<u><신 설></u>		⑧ 제6항에 따른 예산 집행 보
		류 조치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을 기한으로 하여야
		<u>한다.</u>
<u><신 설></u>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부
		터 제6항까지에 따라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
		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지
		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사유
		를 제출하여야 한다.